

月間建築情報

1979. 8. 20 ~ 9. 21

모든 食品接客業所의 신규허가서

消防当局의 同意반도록 - 확대실시

서울시는 8월 21일, 인명피해가 큰 식품접객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10층 이상의 고층빌딩에 들어서는 접객업소의 신규허가시에만 소방당국의 동의를 받게 하던것을,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新規許可와 業所移轉, 名義變更시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존업소인 경우에도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消防施設을 점검해 미비된 시설을 갖추게 하고, 건물 구조상 소방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화재위험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를 이전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다방·불고기집 등 대중음식점과 한정식·일식집 등 전문음식점, 살롱·카바레 등 유흥음식점의 대부분이 소방시설을 강화토록한 현행 소방법의 시행 이전(73)에 세운 기존건물에 들어서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데다가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프로판 개스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재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歷史의 現場(구 明月館터)인 泰和基督敎會館 헐어

道路擴張에 밀려 새빌딩建築計劃

3·1 독립만세운동의 요람지인 서울 鍾路区仁寺洞194 泰和基督敎會館 本館(舊 明月館터)건물이 도시계획에 밀려나게 됐다.

이 일대는 再開發地區로 泰和館앞 폭 8m 도로가 20m로 확장되면서 건물일부가 道路로 取用될 운명에 처하게 되자 監理敎 世界宣敎部 소유 泰和館측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연면적 6,000여평의 12층 빌딩을 건축키로 하고 신축계획서를 제출,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서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3·1 독립선언의 역사적 현장이며, 한국여성사회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담당해온 泰和基督敎會館자리에는 애당초, 李朝 李太祖가 朝鮮을 창건하고, 高麗의 서울 松都로부터 漢城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서울의 중심을 泰和館 자리에 잡고 기념돌을 세웠다. 이들은 지금도 泰和館 정원에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泰和館 본관은 1938년, 明月館을 헐고 그자리에다 연면적 682평의 2층 韓屋을 지은것으로, 건축당시, 독립의 의지를 담기 위해, 순수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채택했을뿐 아니라, 대강당 천장과 벽사이에는 太極을 새긴 목조장식을 달았다.

이 太極장식은 일본 관헌의 눈을 피해 암암리에 달고 준공때는 천을 덮어 걸음으로는 눈에 띄지 않게하고, 몇몇 애국지사들끼리 숨겨진 태극장식의 사연을 얘기하며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부로서 줄곧 기능을 다해왔고, 또 최근 500여년동안 수도로 있어온

관계로 도처에 귀중한 史蹟과 遺蹟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쉽다면서, 江南北지역을 망라한 서울 전역의 史蹟·遺蹟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交通量 많은 道路에 環境施設帶 등 설치

經濟閣議, 道路構造令 改正案 의결

8월 23일, 경제장관회의는 교통량이 많은 道路의 바깥쪽에 環境施設帶를 설치, 도로연변에 밀집되어있는 주거지역이나 공공시설을 騒音 公害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道路構造令 改正令을 의결했다.

또 身體障礙者들이 휠체어를 탄채 버스를 타거나 地下鉄·陸橋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부근의 보도턱을 없애고 지하도 계단의 바깥쪽 일부를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기도 했다.

또 ①도로 양쪽에 폭 2m의 自轉車 專用道路와 ②시가지 중심부 도로에는 폭 2.5m의 自轉車 停車帶를 설치하고, ③陸橋의 높이를 4.5m(현재 4.3m)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④보도의 폭도 현재보다 1.5m~0.5m씩 넓히도록 조정했다.

濟州 不法 豪華別莊 철거지시—내무부

—江原道 原城의 週末農場도—

내무부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임야를 훼손해 방갈로를 건립한 제주도과 강원도 원성군의 호화별장 및 주말농장을 완전히 철거하도록 8월 24일 관계도에 지시했다.

濟州道の 豪華방갈로는 지난 78년 7월~79년 5월 사이에 절대 및 상대농지를 轉用許可없이 74동의 별장을 건축했고 창고 및 관리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동의 별장을 불법으로 건축했으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의 週末農場은 농지와 임야에 無許可로 69동을 건축했었다.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改正令 공포—건설부

8월 24일, 건설부는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중 제 13조 내지 제 34조를 신설하는 改正令을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改正令 全文은 本誌 8월호 p62~64 참조)

建設關聯 団体, 總廢合 촉구—業界

8월 27일 業界에 따르면 현재 民法에 의해 설립된 임의단체는 물론 法定団体が 난립하고 있어 당국은 法改正를 통해서라도 이들 協會 등 단체를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는 2~8개의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고 있어 회비지출 등 비용이 적지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건설관련 협회나 단체로는 大韓建設協會를 비롯하여 建設共濟組合 海外建設協會, 韓國住宅事業協會, 韓國電氣事業協會, 韓國電氣通信工事協會, 韓國用役協會, 軍納輸出組合 등이 있다.

아파트 등의 所有權 한계 명시코자

“共同住宅 所有權에 관한 法律” 준비중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소유권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大法院 판례는 登記上 입주자의 個人所有圈이 인정되는 범위를 專用面積에 그치고, 엘리베이터·복도·공동시설·대지 등에 관해서는 共有로 인정하는 외에 세부적인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권리·의무의 한계가 모호하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共同住宅 所有權에 관한 法律”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8월 29일 건설부에 의하면, 2년전 議員立法으로 “集合住宅의 所有權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을 만들려다 실패한 적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여, 다시 “共同住宅 所有權에 관한 法律”을 만들거나 民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개념을 정립할 예정인데, 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建設部와 法務部, 大法院이 공동으로 검토중인 이 法案에 따르면, 아파트 등 管理는 대통령령(共同住宅管理令)에 맡기지만 專用 및 共同面積의 所有權에 관해서는 구분을 두어 民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의 判例에는 건물의 전용면적만 個人 登記를 인정하고 共同面積에 대해서는 舍人住者의 共有로 하여 人住者 개인의 持分이 인정되고 있으나 持分에 대한 권리·의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專用面積에 책임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나, 가령 共有面積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근 다른 독립주택·아파트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

이 法案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 專用面積에 관한 所有權 등 권리와 책임한계, ●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으로 대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방법·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둘 방침이다.

西歐 등 外國의 예는 民法上 이웃독립 가옥간 강우량 처리문제에 관한 의무등과 같이 共同住宅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보수책임선(예로 아파트 이웃간의 보수 책임한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같은 책임문제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日本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太陽熱利用機器 生産業体 육성

글년 지원자금 15억원. 시설자금 65% 융자금

정부는 太陽熱利用을 촉진키 위해 내년부터 太陽熱利用機器 生産業체를 지정, 이들 업체에 한해 시설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등 중점 육성키로 했다.

8월29일 動資部가 발표한 업체지정기준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중 集熱板 규격품(4"×8") 600개를 생산설치한 업체나 연속공정으로 月 2,000개 생산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과거 6개월 내에 실제 2,000개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내년도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太陽에너지研究所나 太陽에너지協會에서 太陽의 집을 추천할때, 이들 지정업체가 생산한 集熱器를 사용한 경우에만 추진키로 했다.

動資部는 금년 생산업체 지원자금 15억원을 확보 업체별 소요자금에 65%를 융자하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을 8년이내, 운영자금은 2년6월 이내, 금리는 최고 15.5%이다.

新築住宅·아파트·호텔 등에 節電타임 스위치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動資部

動力資源部는 8월30일, 節電을 생활화하기 위해 電氣設備技術基準令(動力部令)을 개정, 모든 신축 住宅 입구와 아파트 입구 복도에는 한번 켜다 3분 이내에 저절로 꺼지는 타임 스위치를 모든 호텔과 여관에는 1분내에 저절로 꺼지는 스위치를 달도록 의무화 했다.

또 기존주택과 아파트에는 이를 권장키로 했으며 220V로 승압되는 지역에 신축되는 경우에는 누전사고를 막기 위한 漏電遮断器도 본인부담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준령은 또, 韓電에 대해서 시가지의 인구 과밀지역의 경우 변전소에서 需用家에 이르는 配電線路는 모두 絶緣配線으로 바꾸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電線은 높이를 5m 이상으로, 電柱높이가 1.8m 미만인 것은 발판못을 닿지 않도록 하고, 모든 變压器와 誘道變压調整器에도 어드시설을 해, 落雷을 예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가정에 대해서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했다.

水害 常習地(전국 686개지역)엔 建築活動禁止

風水害対策法 제정키로—건설부

8월30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水害常習地에서의 건축활동규제조치를 각도·시에 맡겨왔으나 건축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洪水때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이를 법적으로 규제키로 하고 관계당국간에 협의를 거쳐 風水害対策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 水害常

習地の 건축통제조치를 법제화키로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법개정작업을 통해 상습수해지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을 水地 또는 公園用地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방침인데 전국의 상습 수해지역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19, △京畿=20, △江原=26, △忠北=91, △忠南=108, △全北=48, △全南=112, △慶北=117, △慶南=141, △濟州=4.

公共建物 建築規制 해제—건설부

江北 再開發地域 事務所 건물도

建設部는 8월31일, 건축자재 수급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公共建築物등의 건축제한을 9월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규제조치가 해제된것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그 소속기관의 庁舎, 정부투자기관, 은행 건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사무실용 건물, 서울 江北地域의 再開發區域안에 건축하는 사무실용 건물이다.

건설부는 작년 5월에 내린 억제조치이후 5차로 취한 이번 조치로, 철근 5만9천t과 시멘트 16만6천t을 들여 연내에 공공건물 16만7천평과 재개발 구역안의 사무실 건축물 4만3천평 등 모두 21만평의 건축이 예상되어 침체된 건축경기가 다시 풀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도 억제되고 있는것은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45평이상의 아파트, △극장·영화관등 1만평이상의 특수건축물,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평 이상의 일반건축물, △1천평 이상의 종교건축물, △유홍장, △사치성 목욕탕, △서울 강북지역의 판매 시설이다.

不良資材 使用등 규제—건설부

住宅工事監督業務規制 공포

건설부는 주택건설시 공사규모에 비례한 공사감독자배치기준과 자재 검수요령 등을 규정한 “住宅建設工事 監督業務에 관한 規則”을 건설부령으로 제정, 8월31일 공포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감독 업무에 관한 규칙은 住宅建設促進法에 규정된 住宅建設登錄業者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착공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같은 규칙의 제정은 대부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공사규모에 비해 감독 능력이 부족한데다 불량자재를 사용하고 무리한 공정으로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축할때, 주택 건설규모가 가구당 25평 기준으로 100가구가하일 때에는 建築·土木·電氣·機械 技師(2급) 각 1명씩 모두 4명을 배치해야 하며, 100가구가상일 때에는 4명외에 200가구 증가시마다 건축기사 1명을 추가해서 배치해야 하며, 土木·電氣·機械 技師는 400가구 증가시마다 각 1명씩을 증원 배치해야 한다.

竣工未畢 建築物를 구제—정부·여당

“竣工未畢建物에 대한 特措法案” 마련중

政府·与党은 작년말까지 許可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 가운데 建築法違反등으로 竣工檢査를 받지 못한 5万余棟의 未登記 建物가운데 4m 이상 道路에 접해있거나 消防法上的 安全施設, 기타 위생시설·駐車場 등이 갖추어진 건물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立法化할 방침이다.

共和政策委와 서울시 출신 議員들은 9월 1일, 內務·建設·서울市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竣工未達 建物에 대한 特別指置法」(가칭)의 입법문제를 논의, 이같이의 견을 모으고 特措法의 시한을 3년 이내로 줄이기로 하였다.

建設部측은 未登記建物에 대한 過怠料와 일정기간의 財産稅를 부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內務部측은 대도시에 중점이 두어진 이 特措法案은 중소도시등 소도읍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南載熙 政策研究室長을 위원장으로, 吳有邦 議員 및 党專門委員 內務·建設·서울市 관계자로 구성된 法案起草小委를 구성, 오는 정기국회까지 法案을 만들기로 했다.

“建築法施行規則” 改正令 공포—건설부

9월 1일, 건설부는 “建築法 施行規則”中 改正令을 공포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령의 주요 골자는 建築許可手数料의 징수, 斷熱材 使用義務化, 電氣設備容量의 기준 등이다. (改正令 全文은 本誌 8월호 p 59~61 참조)

서울시, 建設局·道路局등 신설

職制 대폭 改編 補強

서울시는 격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 일부를 개편, 建設局을 신설하는 한편, 建設局을 道路局으로, 觀光運輸局을 交通局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또한, 思平·千戶 두 出張所가 區로 승격하고 永登浦 區·冠岳區가 分區되는 등 行政區域이 개편됨에 따라 증

원이 불가피하나 이를 현 정원에서 조정하기 위해 水道·建設·交通·行政担当官 및 地下鉄本部 建設次長制를 폐지하고 각구청에 都市局을 신설키로 했다.

또 企副管理官 밑에 별정직 부이사관이 맡는 企副研究官을 새로 두고, 공무원교육원 수석교관제를 폐지했으며, 住宅建設事業所를 폐지, 그 機能을 신설되는 住宅局 住宅建設課에 흡수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골프場的 목욕탕시설

太陽熱 利用을 義務化—정부

정부는 太陽熱 이용확대를 위해 골프장에 목욕탕 시설을 太陽熱을 이용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9월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골프장 목욕탕시설은 보통 시중의 것보다 3배가량 큰데다 年中 내내 더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고 지적, 유류 소비절약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계당국자는 현재 교통부가 골프장 목욕탕시설에 太陽熱利用義務化 方案을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당국자는 골프장이 넓은 들판으로 集熱板 설치가 쉽고 이용고객들이 住宅를 지을때 太陽熱住宅를 짓게되는등의 연관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對 “이집트” 建設進출을 권장—건설부

“이라크”, “리비아” 등 未修交國에도

建設部는 海外建設受注擴大方案의 하나로 海外 建設業체들의 對 “이집트”進출을 적극 권장하고, 일부 未修交國에 대한 진출업체를 늘릴 방침이다.

9월 5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집트”정부가 시나이半島에서 石油가 나올 경우 20萬의 內國人을 시나이半島로 이주시킬 계획으로 있어, 住宅등 建設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海外建設業체들의 진출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國內建設業체로 “이집트”에 진출한 업체는 東山土建밖에 없으나, 觀光都市인 “카이로”를 중심으로 호텔·銀行 住宅 등의 工事의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아, 더 많은 業체의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건설부는 판단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집트” 건설시장 확대에 대비 “카이로”에 建設駐在官을 새로 두기로하는 한편, 시나이半島 住民移住計劃등에 관한 資料調査를 현지 공관에 의뢰했다.

한편 “리비아”, “이라크”에는 현재 해외건설업체 2개씩만을 진출토록 하고 있으나 5개씩으로 늘리기로 했다.

工事契約에 物價連動制 시행—재무부

不實工事防止대책으로, 5%變動대 적용

정부는 각종 정부공사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시공업자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工事契約金額에 물가변동에 따른 連動制를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9월 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각종 정부공사 계약의 物價變動에 따른 계약금액을 반영해 주지않아 不實工事의 소지가 많았던것을 배제하기 위해 一定 費目에 대해서는 物價變動에 따른 費用增加를 인정,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物價變動에 따른 費用認定對象은 ① 統制價格, ② 政府 등의 認·許可價格, ③ 調達庁長의 調査通報價格, ④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것 등으로 하고, 契約金額 또는 單價를 기준으로 認定費目的 登략폭 合計額이 전체의 5% 이상인 경우 또는 統制價格등의 登략폭이 5%인 경우 계약을 조정토록 했다.

優秀施工業者 指定基準 마련—재무부

하자보수금률과 책임기간도

9월 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공사의 不實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優秀施工業者 指定基準을 새로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기준은 5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1/4이하의 하자 발생자, 부정당행위업자로 제재가 끝난후 5년이상 경과한 자, 5년간 면허 또는 허가 보유자,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사실이 없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는 매년 2월말까지 우수시공업자를 지정하고 이들과 指名競争契約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2인立保制를 1인 이상 연대보증으로 완화하되, 연대보증이행 시공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代金請求權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 工事類型別로 나누어 하자보수보증금률과 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制限競争対象工事인 대규모공사의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電信電話工事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制限 및 指名競争対象工事に 포함시켰다.

建設技能人力 스카우트 점차再開

海外工事 전망 밝고, 내년초 공사 대비

長期布石으로 工高와 姉妹結緣도 늘어

건설업계는 지난 상반기중 金融緊縮에 따른 資金難과 8·8 不動産投機抑制조치로 인한 不動産景氣沈滯, 그리고 海外建設工事 新規 注不振등으로 支能人力 확보에선

뜻 나서지 못했으나, 상반기 신규수주공사중 80년초에 착공예정으로 있는 공사가 적지않고, 또 하반기에 들어 신규수주전망이 다소 밝아짐에 따라 해외진출 건설업체 중 現代建設·大林産業·韓國建業·共榮土建·韓寶住宅·南光土建·東亜建設·력기開發·進興企業·漢陽住宅등을선두로 간부사원 및 기능직 인력확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人力確保는 주로 紙上을 통하고 있는데 그 소요인력규모가 크데 비해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스카우트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건설업체의 기능인력확보전이 피크를 이루었던 77년·78년과 같은 과열현상은 아직 나타나고 있으나, 이같은 양상을 예상, 뚜렷한 人力消化展望도 없이 상반기말이나 하반기초에 이들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나선 일부 해외진출 건설업체 중에는 인력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해외과거시기(채용시기)를 늦추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로석으로 工業系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해외건설공사 수주 증대에 비해, 그 부족난은 80년대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工業系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건설업체는, 三煥企業—龜山工高, 韓信工營—大邱工高, 漢陽住宅—慶南工高, 三扶土建—天安工高, 極東建設—安養工高, 進營企業—全州建設工高, 南光土建—金海建設工高, 京南企業—沃川工高, 三湖住宅—翰林工高, 三益住宅—裡里工高, 大宇重工業—仁川機械工高, 現代重工業—春川機械工高, 王浦企業—蔚山工高 등이다.

太陽熱住宅 融資申請 받아—住銀

동당 최고융자한도 950만원

住銀은 9월10일부터 동당 950만원 최고한도로 太陽熱住宅에 대한 건설자금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11일 住銀에 따르면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개별심사, 융자케 되는데 금년 지원한도는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동당 융자한도는 주택건설자금 500만원, 태양열설비자금 450만원씩 모두 950만원을 넘지못하며, 융자대상은 太陽에너지研究所 또는 太陽에너지協會의 추천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이미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 신청일 현재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택에만 해당된다.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은 34.7~99.8평, 건축면적은 15.12~39.9평에 해당하는 규모이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개인 16.5%, 업체 18.5%로 차등 적용된다.

건설부, 断熱義務化区域을 指定公告

建築許可手数料 면제대상 地区도

건설부는 개정된 建築法施行規則 제25조에 의하여, 断熱材 사용의무화 区域을 濟州道 등 기온이 따뜻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全地域으로 지정, 9월10일 공고했다.

이날 또한, 제1조 제6항에 의하여 建築許可手数料免除対象地区로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태풍 어빙호 및 주디호의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80년 상반기까지 재해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断熱材 使用을 의무화하지 않는 지역은 1月中 平均氣溫이 0℃이상인 지역을 비롯, 다음과 같다.

○濟州道

○釜山市

○全南=木浦, 麗水, 順天, 靈光, 咸平, 新安, 務安, 靈岩, 海南, 康津, 長興, 莞島, 珍島, 宝城, 昇州, 高興, 麗川, 光陽

○慶南=馬山, 蔚山, 晋州, 鎮海, 忠武, 三千浦, 河東, 晋陽, 泗川, 南海, 宜寧, 固城, 統營, 巨濟, 咸安, 密陽, 金海, 昌原, 梁山, 蔚州

○慶州=浦項, 慶州, 月城, 迎日, 盈德, 蔚珍, 鬱陵.

一般住宅등 煖房用 油類貯藏施設,

建築許可時 일괄처리—消防法 改正案

內務部는 9월11일, 현행 消防法의 위험물 취급에 관한 규정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재 난립되어 있는 消防관계 技術協會와 團體를 단일기구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消防法 改定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는 一般住宅의 煖房用 危險物(油類)貯藏施設은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을, 시군의 조례에 따른 建築審議 및 許可過程에서 일괄처리토록 하고, 通常使用量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취급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指定數量(난방용 경유의 경우 500ℓ)의 10배 미만의 유류를 난방용으로만 저장할 때에는 그 저장시설 설치에 일반주택은 물론 업소에서도 危險物取扱任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에너지利用 合理化 基金 5,000億 圓造成—91년까지

太陽熱機器開發, 에너지절약형 構造 개발등에

정부는 오는 91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증가율을 연 평균 9.8%로 억제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91년까지 5,000억 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9월11일 動資部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은 재정지원과 특별세 신설 또는 公債發行등으로 조성, 에너지 절약형 機器研究 및 설치, 太陽熱機器製造 건물의 断熱施工, 에너지節約型 構造 등 에너지 절약 사업에 용자해 줄 계획인데, 基金造成을 위해 내년에 우선 110 억원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정부는 에너지利用 合理化를 81년까지 1.8%, 86년까지 6.9%, 91년까지 10.6%씩의 에너지를 절약시켜 나갈 계획이다.

日本海外建設에 中共人力 8万 제공 제의

賃金조건등 낮아, 韓國 打撃 클듯

中共은 日本의 건설업체가 제외한 제3국에서의 建設工事に, 中共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日·中共建設 合作에 대해 設計·調査·施工을 담당할 8만명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賃金도 국제수준보다 낮게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9월10일 日本 大阪商工会議所가 밝혔다.

이같은 中共의 人力進出方針으로 지금까지 해외에 대량의 노동자를 보내 많은 외화를 획득해 온 韓國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中共 노동합작문제는 작년말에 日·中共間의 교섭이 시작돼 그동안 日本측의 海外建設協會와 中共측의 中國建築工程公司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中共측이 日本에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中國建築工程公司는 각종 건설공사를 도맡을 수 있는 대형 종합기업으로 設計·調査·施工등의 능력이 있다. ② 공사기간은 長短을 가리지 않으며,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필요한 경우 잔업을 한다. ③ 잔업수당은 日·中共間 協의로 정한다. ④ 노무비용의 표준은 공사의 성격과 종류·장소 등에 의하며, 賃金은 구체적으로 상담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의 수준보다 낮게 한다. ⑤ 휴일은 축제일·휴일 등 제3국 및 日·中共쌍방의 습관을 존중, 협의하여 정한다.

建築法·建築士法 改正案등

정부, 定期国会에 제출 예정

정부는 오는 9월20일에 열릴 제103회 정기국회에 112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중 建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建築資材開發促進法(制), ○建設業法(改), ○住宅建設促進法(改), ○建築士法(改), ○建築法(改), ○大都市圈整備法(制), ○自然公園法(制), ○都市公園法(制), ○土地區劃整理事業法(改), ○風水害対策法(改) 등.

建築은 都市設計에 따라, 工事監理制 強化等

建築法 改正案의 주요내용

정부는 시장·군수가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적 도시설계를 수립, 이에 맞지않는 건축물의 신축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또 공사감리제도의 강화와, 건축재료의 KS 표시품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建築法改正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한다.

9월17일 건설부가 여당권 심의에 넘긴 建築法 改定案에 따르면, 都市計剛區域과 工業地域·聚落地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區域内の 건축물과 기타구역내의 연면적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²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②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²이내 또는 연면적의 1/10이내인 바닥면적의 증감이나 대수선에 준하는 設計變更등은 사전에 시장·군수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都心部 또는 幹線道路邊 등 시장·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都市設計를 수립 공고한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都市設計에 적합하게 건축토록 규정하고, 不實工事의 방지를 위해 建築補助士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켜 工事管理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발코니面積을 줄여—住宅業界

價格統制등에 対応키 위해 縮少 調整

아파트에서 서비스로 간주되는 발코니面積이 줄어들고 있다. 9월19일 업계에 따르면, 발코니의 축소현상은 금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 9월부터 분양에 나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발코니 일부를 온실 등으로 변경하여 專用面積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코니면적의 축소에 따라 업체들은 발코니에 대한 建築費를 절감시킬뿐 아니라, 늘어난 專用面積으로 평당분양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50평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서 발코니면적은 보통 7~8평에 달했으나 최근 분양되었거나 앞으로 분양예정인 아파트에서는 3~4평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양면적 35평이하의 복도식아파트에서도 약 절반이 줄어 2평 전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코니면적 1평을 줄여 온실로 하여 전용면적에 산입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70만원이면, 35평에서는 적어도 평당가격을 2만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최근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통제를 간접적으로 벗어나기 위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18에서 계속

7) 공간 난방 부하

건물의 외부 벽을 통한 열 전달 손실과 스며드는 바람에 의한 열 손실과의 합은 그 건물의 시간당 열 손실율이다.

난방 도일을 근거로 한 공간 난방 부하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설계 열 손실율로부터 계산된다.

$$\frac{\text{설계 열 손실율}}{\text{설계온도차}} \times 24 = \text{공간난방부하 BTU/도일 (度日)}$$

월간, 연간 난방부하는 도일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text{난방부하 (BTU)} = \frac{\text{BTU}}{\text{度日}} \cdot \text{난방度日의 공식으로 나타}$$

내어진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이 16,000 BTU/度日의 열량을 요구한다 할때 1월중의 난방度日이 1,000이고 연간 난방度日이 5,000이면 1월중에 요구되는 총 열량은

1월중에 요구되는 총 열량은

$$16,000 (\text{BTU/度日}) \cdot 1,000 (\text{度日}) = 16\text{m. BTU}$$

1년간에 요구되는 총 열량은

$$16,000 (\text{BTU/度日}) \cdot 5,000 (\text{度日}) = 80\text{m BTU로 계산된다.}$$

$$\ast \text{ m. BTU} = 1,000,000 \text{ BTU.}$$

과학기술연구소 부속 태양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